

인구위기 대응 정책 자원을 위한 통계 제공 확대

- 매년 혼인상태별 인구, 노년부양비 등 주요 인구지표, 다문화가구 MD 등 제공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 대응 및 경제·사회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등록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결과를 확대 제공한다.

*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방식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의 기간(基幹) 통계이며 유일한 전수조사로서,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업경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매년 7월 공표되는 등록센서스 결과에 더해 ① 시도별 혼인상태별 인구·가구, ② 시군구별 유소년부양비(比)·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③ 장애인 인구·가구, ④ 다문화가구 등을 보고서,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 제공채널을 확대하여 새롭게 제공하는 것이다.

※ **[붙임1]**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 주요 결과

<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 개요 >

구분	제공방법 및 제공범위	
	기존	개선("24.10.~)
① 혼인상태별 인구·가구	보도자료(전국)	→ 보고서(시도), 보도자료
② 유소년·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보도자료(시도, 일부 시군구)	→ KOSIS(시군구), 보도자료
③ 장애인 인구·가구	보고서(전국)	→ KOSIS(전국), 보고서
④ 다문화가구	보도자료, 보고서, KOSIS(시군구)	→ 마이크로데이터(읍면동)*, 보도자료, 보고서, KOSIS

* 원자료(Raw data)에서 오류를 수정한 개별 단위(개인, 가구 등)의 통계기초자료

먼저, '혼인상태별 인구·가구'는 행정자료 기반으로 작성한 최초의 전수 통계로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수록된다. 통계청은 올해 7월 처음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국 단위 혼인상태 통계를 보도자료로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 발간되는 보고서를 통해 시·도별 결과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KOSIS에도 확정치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로써 통계청은 2015년 이후 표본조사 결과로만 추정해 왔던 혼인상태별 인구·가구를 내국인 대상 전수 통계로 매년 제공하게 된다. 이 자료는 향후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 연령별 유배우율(率) 분석 등 혼인·출생 관련 연구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부터는 각각 보도자료와 보고서에만 수록해 왔던 '지역별 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장애인 인구·가구'를 KOSIS 통계표로 신규 제공한다. 이용자로 하여금 각 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최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다문화가구를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최초 제공한다. 그간 다문화가구는 KOSIS 통계표 형태로만 제공해 왔으나, 오는 12월부터는 MDIS 내 '다문화가구 여부' 항목을 추가로 서비스하여 가구유형별, 지역별 분포 등 데이터 심층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새롭게 제공되는 등록센서스 결과가 인구위기 대응 등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통계청은 앞으로도 증거기반 정책 지원과 통계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 **보도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에 게시
- **통 계 표**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에 수록
- **보 고 서** : 2024년 10월 제작·배부, 온라인간행물(KOSIS)에 수록
- **마이크로데이터**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에 제공

담당 부서	조사관리국	책임자	과 장	김서영 (042-481-3720)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주 (042-481-375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일 러 두 기

□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

- 본 자료는 매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결과임
- 2015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항목은 매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표본조사 항목은 5년 주기 현장조사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음

□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자료는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주요 결과이며, 보다 상세한 자료는 KOSIS·보고서·MDIS를 통해 이용 가능함
- 혼인상태, 연령별 인구구조, 장애인 인구·가구는 내국인 대상 분석 결과임
- 다문화가구는 일반가구 대상 분석 결과임
- 등록센서스는 행정자료 기반 가공통계로서, 일부 항목의 경우 현장 조사에 의한 조사통계와 포괄범위 및 개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혼인상태별 인구·가구는 잠정 결과로 2025년에 확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잠정치와 확정치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람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보도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에 게시
- 통 계 표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에 수록
- 보 고 서 : 2024년 10월 제작·배부, 온라인간행물(KOSIS)에 수록
- 마이크로데이터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에 제공
- 등록센서스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https://meta.narastat.kr>)의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에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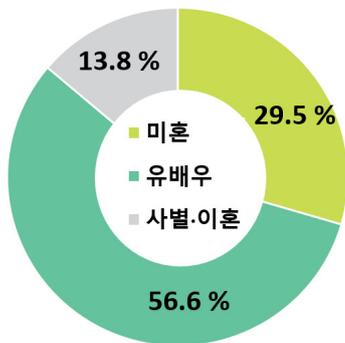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 주요 결과

[혼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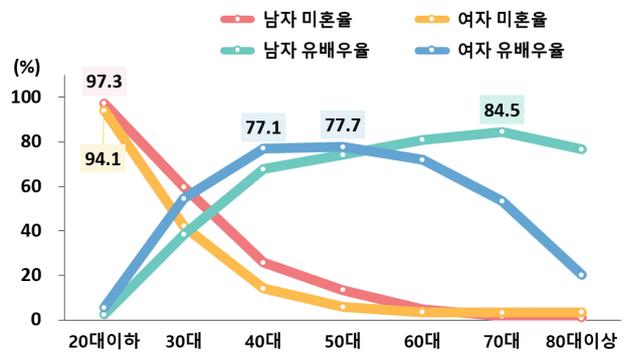
2023년 11월 1일 기준 전국 미혼율은 29.5%, 유배우율은 56.6%

- 18세 이상 내국인 42,941천 명 중 미혼 인구는 12,675천 명(29.5%), 유배우 인구는 24,321천 명(56.6%), 사별·이혼 인구는 5,945천 명(13.8%)
- (성별) 남자 미혼율은 34.2%로 여자 미혼율 24.9%보다 9.3%p 높음
- (연령별) 미혼율은 남녀 모두 20대이하(남자 97.3%, 여자 94.1%)가 가장 높고, 유배우율은 남자는 70대(84.5%), 여자는 50대(77.7%)가 가장 높음

< 혼인상태별 인구 비중, 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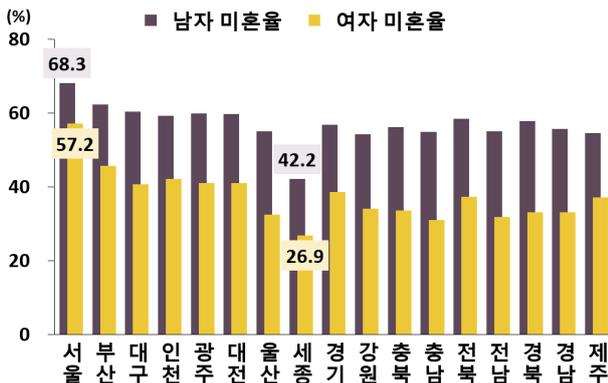
< 성별 연령별 미혼율 및 유배우율, 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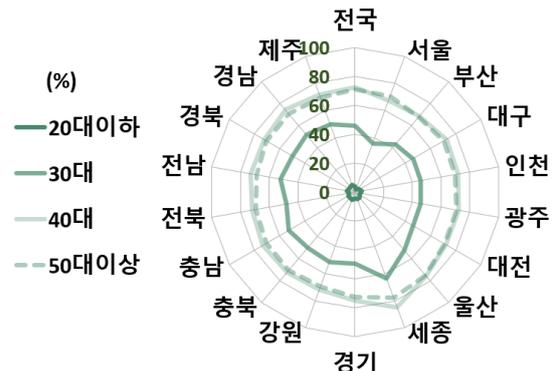
30대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62.8%),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34.4%)

- (미혼율) 혼인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의 미혼율은 51.3%로 나타남
* [출처]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3년 출생 통계
- 시도별로 보면 서울(62.8%)이 가장 높고, 세종(34.4%)이 가장 낮음
- (유배우율) 세종이 전연령(64.8%), 30대(63.7%), 40대(84.6%) 모두 가장 높음

< 시도별 성별 30대 미혼율, 2023년 >



< 시도별 연령별 유배우율, 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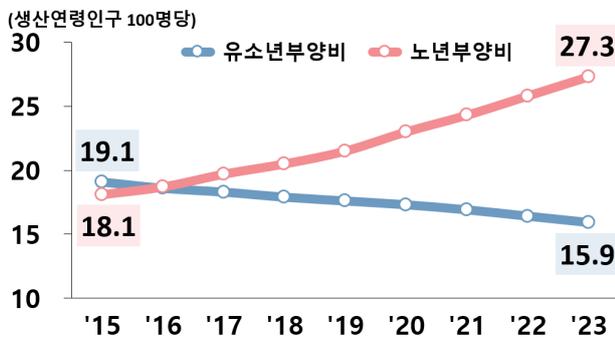


[연령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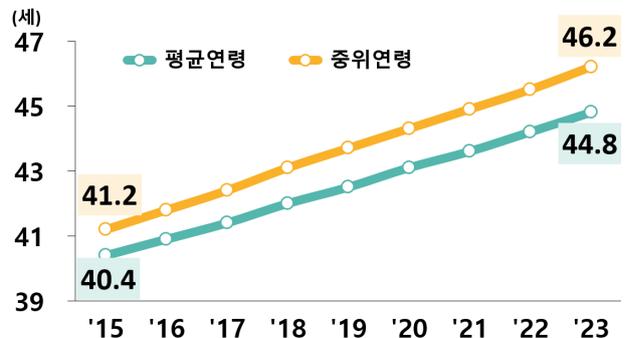
2023년 내국인의 노년부양비는 27.3으로 매년 증가, 유소년부양비는 15.9로 매년 감소

- * 유소년부양비=(0~14세인구)/(15~64세인구)*100,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100
-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고령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023년 **27.3**으로 유소년부양비 **15.9**보다 **11.4** 높음
 - 노년부양비는 2016년 처음 유소년부양비보다 높아진 후 지속적으로 증가
- **(평균 및 중위연령)** 2023년 내국인 평균연령 44.8세, 중위연령 46.2세로 2015년 대비 각각 4.4세, 5.0세 상승
 -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평균연령보다 중위연령이 더 빠르게 상승

< 유소년 및 노년부양비, 2015~2023년 >



< 평균 및 중위연령, 2015~2023년 >



< 시군구별 유소년 및 노년부양비, 2015~2023년 >

[2015년] [2019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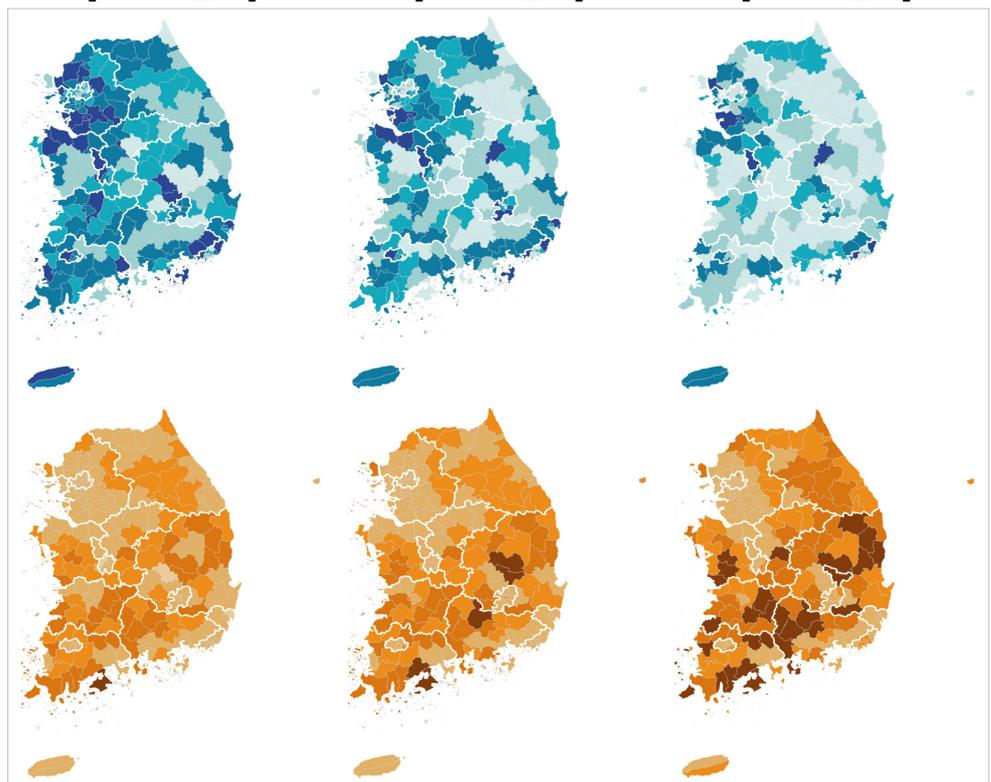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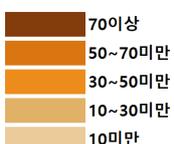
유소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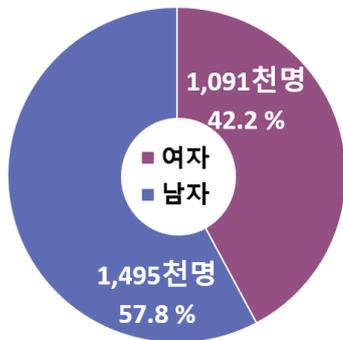
[장애인 인구 · 가구]

2023년 11월 1일 기준 장애인(내국인) 인구는 259만 명, 장애인 비율은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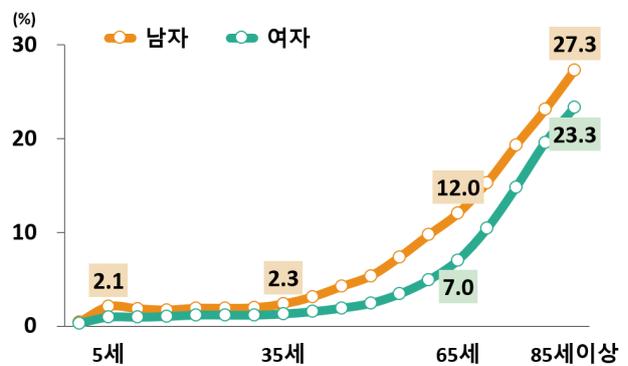
* 장애인 비율 = (내국인 중 장애인 인구)/(내국인 인구)*100

- 장애인(내국인) 인구는 2,586천명으로 전체 내국인의 5.2% 차지
- (성별) 남자 57.8%(1,495천 명), 여자 42.2%(1,091천 명)
 - 성별 장애인 비율은 남자(6.0%)가 여자(4.4%)보다 1.7%p 높음
- (연령별) 60대(23.8%), 70대(21.7%), 80대 이상(20.1%) 순으로 많음
 - 연령별 장애인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85세 이상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남자 27.3%, 여자 23.3%임

< 성별 장애인 인구, 2023년 >



< 성 및 연령별 장애인 비율, 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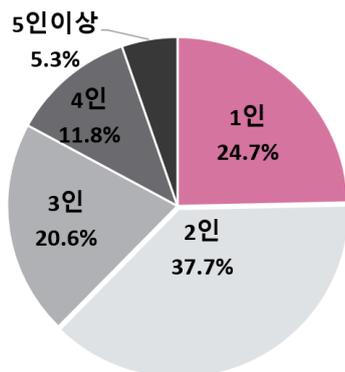


2023년 장애인 가구는 227만 가구, 장애인 1인가구 비중은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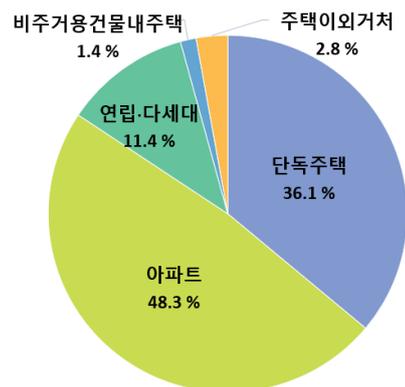
* 장애인(내국인)이 가구원인 일반가구

- 장애인 가구는 총 2,273천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0.3% 차지
 - (가구원수별) 2인가구(37.7%), 1인가구(24.7%), 3인가구(20.6%) 순으로 많음
 - (거처종류별) 아파트(48.3%), 단독주택(36.1%), 연립·다세대주택(11.4%) 순으로 많음

< 가구원수별 장애인 가구 구성비, 2023년 >



< 거처의 종류별 장애인 가구 구성비, 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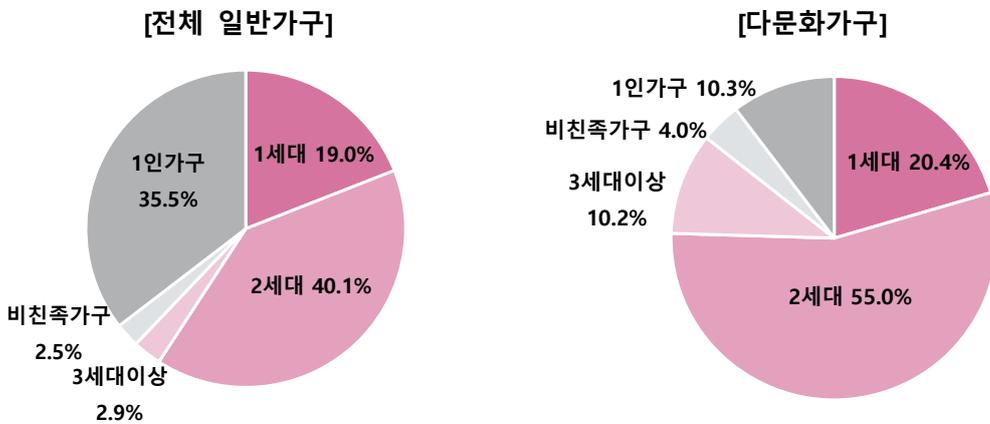


[다문화가구]

2023년 다문화가구 중 친족가구는 85.7%(33만 가구), 1인가구는 10.3%(4만 가구)

- 다문화가구 일반가구(389천 가구) 중 친족가구는 85.7%(333천 가구), 1인가구는 10.3%(40천 가구), 비친족가구는 4.0%(16천 가구) 차지
 - 일반가구 대비 다문화가구 중 친족가구 비중은 23.6%p 높고, 1인가구 비중은 25.2%p 낮음
- 평균 가구원수는 2.95명으로 전체 일반가구 2.21명 보다 0.74명 많음

< 가구유형별 가구 구성비, 2023년 >



일반가구 중 다문화가구 비율이 10% 이상인 읍면동은 8개, 모두 서울·경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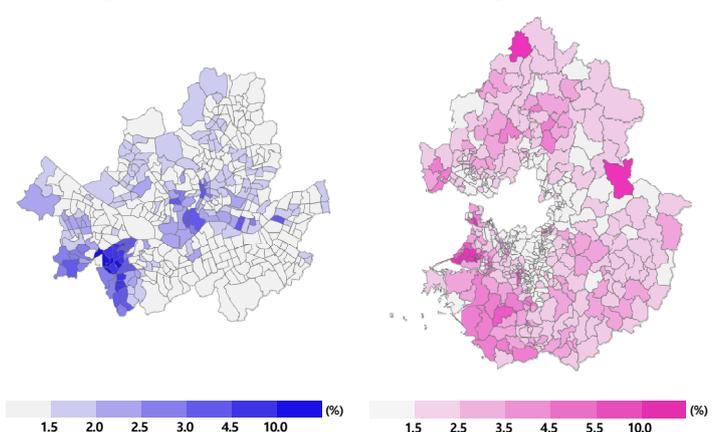
* 다문화가구 비율 = (다문화가구 중 일반가구)/(전체 일반가구)*100

- 다문화가구 비율이 10% 이상인 읍면동은 8개로, 경기 안산시 원곡동(39.2%),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17.4%), 구로구 구로2동(13.9%) 순으로 높음

< 다문화가구 비율 상위 읍면동, 2023년 > (단위 : %)

순위	읍면동	다문화가구 비율 (%)
1	경기 안산시 원곡동	39.2
2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7.4
3	서울 구로구 구로2동	13.9
4	경기 시흥시 정왕1동	12.9
5	경기 안산시 선부2동	11.3
6	서울 구로구 구로4동	10.7
7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10.6
8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0.0
9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9.0
10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8.9

< 서울·경기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비율, 2023년 >



1. 목 적

-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와 구조, 분포, 특성 파악
 -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학술 연구 및 민간 부문 경영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연 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2015년도 이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수항목 매년 공표(표본항목은 5년 주기 현장조사)

3. 법적근거

- 총조사의 실시 : 통계법 제5조의4,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
- 지정통계 지정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제101001호(인구총조사)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제101002호(주택총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1036호, 2024. 1. 19. 타법개정

4. 기준 시점 : 2023년 11월 1일 기준

5. 대상 및 방법

- 대상 : 기준 시점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3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방법 : 12개 기관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6. 주요 용어 및 집계기준 설명

○ 혼인상태

- 미혼율 :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중 미혼 인구 비율
- 유배우율 :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중 유배우 인구 비율

○ 인구구조

- 유소년인구 : 0~14세 인구
- 생산연령인구 : 15~64세 인구
- 고령인구 : 65세 이상 인구
- 유소년부양비(比)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인구

$$\text{유소년부양비} = \frac{0 \sim 14\text{세 인구}}{15 \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년부양비(比)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text{노년부양비} = \frac{65\text{세 이상 인구}}{15 \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총가구 = 일반가구 + 집단가구 + 외국인가구

- 1)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친족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 비친족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1인가구 : 가구 내 가구원이 1인인 가구
- 2)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3)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 장애인 가구 : 장애인(내국인)이 가구원인 일반가구

- 다문화가구 : 귀화자 등이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등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이며, 일반가구와 외국인가구로 구분됨
 - 귀화자 등 : 국적법상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이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결혼이민인 자 또는 내국인(귀화자 등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 다문화자녀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등의 24세 이하 자녀